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보수 기준 변경	참조 지수 변경	투자대 상자산 추가	결산	변 동 성	기 타
1	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-	-	-	-	-	-
2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-2 호	-	○	-	-	-	-	7), 8)
3	미래에셋글로벌밸리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	-	-	○	-	-	-	-
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	○	-
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○	○	○	7), 8)
6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(주식)	-	-	-	○	○	○	-
7	미래에셋 G2 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○	-
8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9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10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-	-
11	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12	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○	○	-
13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-	-
14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H-JPY)(주식)	-	-	-	-	○	○	-
15	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-	-	-	-	○	○	-
16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-	○	○	-
17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 호	-	-	-	-	○	-	-
18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19	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20	미래에셋슬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-	○	-
21	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○	○	-
22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 호(H)(주식)	-	-	-	-	○	○	-
23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	-	-	-	-	○	○	-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보수 기준 변경	참조 지수 변경	투자대 상자산 추가	결산	변 동 성	기 타
24	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○	-
25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26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27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28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29	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0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31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2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33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34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35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36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○	○	-
37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38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39	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40	미래에셋퇴직플랜 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1	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2	미래에셋퇴직플랜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3	미래에셋퇴직플랜 G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4	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5	미래에셋퇴직플랜 G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6	미래에셋퇴직플랜 G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7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48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1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49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보수 기준 변경	참조 지수 변경	투자대 상자산 추가	결산	변 동 성	기 타
50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	-
51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	○	-
52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53	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-	○	-
54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55	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보수 기준 변경
- 3) 참조지수 변경
- 4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6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12월 13일 (수)

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아래 참조 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[아래 참조 1]
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
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	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

[참조 1]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종류 C-P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	0.68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3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	0.58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29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보수 기준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9 조(보수)	<p>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<생략></p> <p>단,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분배하여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이 1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, 1호내지2호의 보수율은 "0(零)" 으로 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13. 나. 집합 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주4) 자산운용관리보수율 및 판매회사보수율은 투자신탁재산의 순자산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되는 경우 "0(零)" 으로 합니다.

3) 참조지수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*참조지수: MSCI AC World Index	*참조지수: MSCI AC World Index*95% + Call*5%

4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 4. 제1호 <u>내지 제3호</u>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]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]

	<생략> <신설>	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6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06</u>	<u>5.19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4	<u>13.7</u>	<u>8.57</u>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2	2	<u>22.27</u>	<u>16.32</u>
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1	2	<u>25.32</u>	<u>20.46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5	<u>5.57</u>	<u>3.98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3	<u>19.11</u>	<u>13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4.69</u>	<u>17.78</u>
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8.08</u>	<u>5.86</u>

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H-JPY)(주식)	3	3	<u>14.33</u>	<u>12.61</u>
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3	3	<u>14.26</u>	<u>12.91</u>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2	2	<u>22.25</u>	<u>16.1</u>
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(주식혼합)	2	2	<u>18.87</u>	<u>18.31</u>
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4.79</u>	<u>18.03</u>
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	4	<u>4.68</u>	<u>5.36</u>
미래에셋차이나과장판증권투자신탁(주식)	2	2	-	<u>23.43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H)(주식)	2	2	<u>18.91</u>	<u>16.71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2호(UH)(주식)	2	2	<u>18.06</u>	<u>16.6</u>
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	1	2	<u>28.58</u>	<u>22.29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61</u>	<u>6.94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61</u>	<u>5.85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5	<u>7.03</u>	<u>4.28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3	4	<u>10.05</u>	<u>7.3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2	<u>26</u>	<u>17.75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58</u>	<u>7.45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4.74</u>	<u>17.84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3.5</u>	<u>3.6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5</u>	<u>4.48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76</u>	<u>5.54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4	<u>12.54</u>	<u>9.3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2.06</u>	<u>2.4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2	2	<u>21.82</u>	<u>15.82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1.86</u>	<u>1.82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04</u>	<u>3.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3.85</u>	<u>4.0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5	<u>5.19</u>	<u>4.77</u>
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91</u>	<u>5.7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3.8</u>	<u>4.05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5	<u>5.05</u>	<u>4.7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58</u>	<u>5.62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28</u>	<u>6.6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46</u>	<u>15.0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3.81</u>	<u>3.9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5	<u>5.3</u>	<u>4.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12</u>	<u>5.92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2.63</u>	<u>16.38</u>
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4	13	9.74
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2	3	19.01	11.26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4	12.58	9.46
미래에셋퇴직플랜 G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4	11.82	9.01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 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<u>정당한 사유없이</u>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